

# 주식양수도계 약서

서성기(이하 "감"이라 한다.)를 양도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원익 대표이사 이용한(이하 "을"이라 한다.)과 이용한(이하 "병"으로한다.)을 양수인으로 하여 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피에스(이하 "회사"라 한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등 33번지 소재)의 보통주식에 대한 예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양수도의 목적>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추)아이피에스가 발행한 보통주식 810,475주(율: 234,500주,병: 575,975주) (주당 핵면가액 오천원)을 "물"과 "병"에게 양도한다.

### 제2조<양수도 대골>

상기 제1조에서 규정한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일곱 4,052,375,000정으로 한다. 제3조<대금의 지급방법>

1. 제약금 및 1차 중도금 : 주식양도굴액의 50% < 2.026,187,500원 > <계약체설일>

2. 2차 중도급 : 주식양도콤액의 25% < 1,013,098,750원 > <2000년 11월 15일>

3. 찬 금 : 주식양도금액의 25% < 1,013,093,750원 > <2001년 11월 15일>

## 제4조<명의개서>

"갑"은 제3조의 계약품을 영수한 후 7일 이내에 "울" 과 "병"에게 등 범인의 주석을 명외개서 하기로 하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권>

"갑"은 계약체결 후 회사(IPS)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윷"과 "녕"에게 양도하며 "병"은 계약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다.

#### 제6조<공 중>

분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 과 "을" 과 "병"은 등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중하기로 한다. 제7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과 "병"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9년 : 취 경

양토자 : "갑"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등 합보미토아파트 207-1002

주민등록번호: 510716-1036319...

성 명:서성기

양수자 : "욮" 주 쇼 : 경북 구메시 구포

상 호: 쿠식회사 원

.대표이사: 이 용 한

양수자 : "병"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9-9 삼성파크타워 302호

주민등록번호: 540406-10415

선 명: 이 용



99.11.14

190

品为

為人名五路上

0,8%0

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全社的

<u>@</u>

6

ᅃ

9

																<del>-,</del> ')		_
자 성 수 증 (23 사 년 (남세자보관용) (강남	세 주 민 세 (양도소득할)	A SA A	古 A 247 CHIS HIS SOLK 201-1000	세 주민등록번호 <i>(101) 6 ~ 103631 9</i>	자 사업자등록번호	<b>祖朝世</b>	소득세귀속년도	소득의종류 소득세액 (양도일자)	교수 그 선	N.11.86 89.11.14	2日子代文学代本人有对学的	(サインクの、みな)	아 나는 나는 하나	1999년 월 일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40	20日子初3年	
4年	- N	-	60 K	K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업사하기반도 그 첫 번 당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표준 양도소득	다 다 다	44) 市中界	্ব ক		19991		강남구청장	

7.1.18

수정신고일

+1/x- 1/4

양도물건 (양도알자)

क्र

CHIS HI STURE JOY-JORK

7

20

(양도소득할)

8/162401 ~ 91/10

강남 23

보관용)

할)신고납부서